

2024년도 아케마 단체주식청약제도

## 한국직원 설명자료



아케마(Arkema)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2024년도 아케마 단체주식청약제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의 청약 및 주요 세무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 → 한국에서의 청약

여러분에게 전달된 직원용 브로셔 및 기타 자료들도 함께 참조하길 바랍니다.

#### ■ 직원을 위해 할당된 증자

아케마 그룹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할당된 증자의 실행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직원들은 아케마 주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케마 단체주식청약제도는 “클래식(Classic)” 제도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전체 청약주식수가 신청대상 주식수(1 350 000주)를 초과하게 되면 청약주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 자격요건

아케마 또는 아케마가 직간접적으로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청약기간 마지막 날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들 직원들은 청약기간 중 청약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 청약기간

청약기간은 2024년 9월 16일에 시작하여 2024년 9월 30일(9월 29일 포함) 에 종료됩니다.

귀하가 2024년도 청약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귀하는 2024년 9월 16일과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www.ake2024.arkema.com](http://www.ake2024.arkema.com)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 청약(“Subscribe”)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사전에 귀하의 직원 이메일주소로 귀하에게 송부되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직원 이메일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청약신청서 서면을 2024년 9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7층에 제출함으로써 2024년도 청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청약가격

아케마 주식의 청약가격은 “준거가격” 에 대하여 25%할인된 가격입니다.

준거가격은 아케마 이사회가 청약을 승인한 날인 2024년 9월 11일 이전 20거래일 동안의 아케마 주식 개시(開始) 가격의 평균값에 기초하여 결정된 가격입니다.

청약금액은 청약 개시기간 이전에 결정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약기간 동안의 청약금액 납부는 동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아케마 주식가치는 유로화 대비 원화 간의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반대로, 원화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되는 주식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 ■ 투자 한도

투자 가능한 최대청약금액은 (i) 아케마 주식 750주의 청약가격 및 (ii) 귀하의 2023년도 급여총액의 25% 또는 2024년도 예상 급여총액의 25% 중 적은 금액입니다.

최소투자금액은 1주입니다.

## ■ 납입방법

다음의 납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9월 30일까지 현금지급에 의한 납입(계좌이체에 의한 지급), 또는
- 급여공제(아래에 설명된 고용주 대출의 경우)

급여공제에 의한 납입방법을 선택할 경우, 여러분의 고용주가 청약신청서에 기입된 청약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제공하고, 동 대출금에 대하여 24개월 동안 급여공제를 통하여 균등한 금액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월 급여공제액은 월 순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여공제에 의한 납입방법을 선택할 경우, 자동급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외국환관리

주식취득금액을 송금하기 위하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할 금액 및 청약관련 증거서류(예, 청약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취득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 개별 직원은 청약신청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송금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식의 관리

여러분이 청약하는 주식은 직접 여러분 명의로 보유됩니다.

## ■ 5년간의 투자금액 인출제한

본 청약제도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2029년 10월 30일 종료) 이 기간 동안 조기인출(아래의 “조기인출” 참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투자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조기인출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출제한기간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의 혼인;
2. 최소한 두 명의 자녀에 대하여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자녀의 출산 혹은 입양;
3.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법원에서 최소 한 자녀 이상이 해당 직원의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명령한 경우;
4. 직원, 배우자 혹은 자녀가 프랑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5. 직원 혹은 배우자의 사망;
6. 수혜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수혜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7. 고용계약의 종료;
8. 직원, 자녀 혹은 배우자가 프랑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저축자금을 분배하는 경우;
9. 직원의 과도한 부채(over-indebtedness);
10. 새로운 주거지의 조성을 수반하는 주 거처의 취득 또는 증축, 또는 현지 당국이 명시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주 거처의 재해 복구를 목적으로 저축자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기 내용은 프랑스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현행 조기인출 관련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기인출 대상은 프랑스 법률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기인출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 내리기 전에, 프랑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조기인출신청이 가능한 경우인 사망, 가정폭력, 장애 또는 고용계약의 종료 이외의 경우, 직접(또는 그 유언 집행자를 통해)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인출제한기간 종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 소속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당

여러분은 청약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 의결권

여러분은 아케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인출제한기간의 만료

5년 동안의 인출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또는 조기인출 대상자일 경우 인출제한기간 만료 전에 투자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제한기간 만료 직전에 여러분에게 투자금액의 인출가능 여부가 통보될 것입니다.

# 무상주식

## ■ 무상주식의 부여

아케마 이사회는 무상주식제도운영규칙(Free Share Plan Rules)에 따라 모든 클래식 청약(Classic Offer) 참가자들에게 무상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주식 부여는 2024년 11월 5일(“부여일”)자로 시행될 것입니다. 무상주식제도운영규칙의 주요 내용을 이하에 기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상주식제도운영규칙(프랑스어 또는 영어)을 요청시 인사부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주식제도에 참가하는 아케마 고용주들을 이하 “참가회사” 라 합니다.

## ■ 자격

무상주식제도에 따라 주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클래식 오퍼 참가를 위한 유효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신청을 위한 제반 조건을 이행하였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부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용지속조건 예외사항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여일 당시 아케마 그룹사에 의하여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무상주식을 부여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고용지속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무상주식의 수 및 무상주식 부여 한도

무상주식제도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아케마의 무상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대상직원에게는 당해 직원이 청약한 4주당 1주의 매칭 주식(matching share)이 부여되며, 매칭 주식은 최대 25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청약 주식은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아케마 청약서(Arkema Offer)상의 개별 주문 또는 합계 주문을 공제한 후의 실제 교부될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 무상주식 부여에 관한 정보

이사회가 무상주식을 부여한 날로부터 수 주 이내에 대상직원에게는 무상주식 부여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가 제공되며, 이러한 통지서에는 부여된 무상주식의 수가 기재될 것입니다.

## ■ 무상주식의 권리확정 및 교부

무상주식은 부여 시점으로부터 4년째가 되는 날, 즉 2028년 11월 6일(“교부일”)에 교부될 것입니다. 단, 위 기간 동안 무상주식제도운영규칙의 제반 조건(고용지속조건 등)을 충족하였어야 합니다. 부여일로부터 주식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권리확정기간”(Vesting Period)이라 합니다. 교부일까지는 무상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상주식과 관련하여 지급될 배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으며(또는 배당기준일이 당해 일자 이전인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도 갖지 않습니다.

## ■ 무상주식에 대한 권리의 양도불능

무상주식 부여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권리는 각 대상직원에게 전속됩니다. 대상직원은 무상주식제도에 따라 무상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대상직원의 사망시 법정수익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상기 제한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됩니다.

## ■ 고용지속 조건

무상 주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상 직원은 권리확정기간내내 아케마그룹(아케마 및 아케마가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직원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확정기간 동안 어느 때든지 대상직원이 아케마 그룹의 직원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이러한 직원은 무상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상기의 직원이 추후 아케마 그룹에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 ■ 고용지속 조건의 예외사항

해당 권리확정기간 동안 대상직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원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대상직원은 고용지속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사망

대상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혜자의 법적 상속인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무상주식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여되는 여하한 무상주식은 요청 이후 신속히 상기의 상속인에게 교부되며, 권리확정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 사망한 대상직원에게 부여되는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상속인에게 교부됩니다.

### (ii) 장애

프랑스 사회보장법제 L조 341-4(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에 정해진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대상직원에게 교부됩니다.

### (iii) 퇴직

해당국가의 적용법 또는 고용주의 관행에 따라 정해진 정년 퇴직 시

이러한 경우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대상직원에게 교부됩니다. 이 예외사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iv) 정리해고 또는 사유 없는 해고

정리해고 또는 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대상직원에게 교부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 무상주식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 (v) 참가회사의 자격상실 또는 사업이나 운영부문 매각

참가회사의 지분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 또는 운영부문(아웃소싱포함)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회사, 사업 또는 운영부문의 대상직원은 이와 같은 변경이나 매각으로 인해 무상주식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교부됩니다.

## ■ 무상주식 소유권 및 매도 제한

교부된 여하한 주식은 교부일에 대상직원의 전적인 재산이 됩니다. 대상직원은 이와 같은 교부일자로, 특히 아케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나 대표권 및 배당금 수령권과 같은 무상주식과 관련된 모든 소유권으로 인한 이익을 갖게 됩니다.

무상주식 수령 이후, 수령인은 내부자 거래 제한 이외에 매도 제한 없이 이러한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케마의 재량에 따라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식보유 펀드(FCPE)에 교부될 수 있으며, 대상직원은 무상주식제도에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교부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상직원들에게는 교부일 전에 교부 방식에 대해 안내가 될 것입니다.

아케마가 무상주식을 직원에게 부여 또는 교부함으로써 인해 대상직원을 대신하여 세금, 사회보장보험금 또는 여타 정부관련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아케마는 해당직원이 아케마가 요구하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거나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상주식을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을 미루거나, 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 수익금에서 관련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 무상주식제도 변경

교부일 이전에 회사의 분할 또는 여타 사업체로의 전체적 또는 사실상 전체적 자산 양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아케마의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무상주식제도에 따라 최초 제공된 아케마 주식을 존속회사 또는 승계인의 주식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주식제도는 아케마의 이사회 또는 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직원들을 위한 세금에 관한 정보

본 요약에서는 (i) 한국세법 및 1979년 6월19일 서명되어1981년 2월1일에 발효되었으며 1992년3월1일에 개정된 한-프랑스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이하 조세협약)의 적용 목적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며 (ii) 동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든 구체적인 사례에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본 요약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권고사항으로서, 직원들은 아케마 직원 주식청약제도에 가입함에 따른 세무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자문 제공자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세무사항들은, 청약 당시 유효한 것으로서 조세협약뿐만 아니라 한국 및 프랑스 세법 그리고 세무관행 따라 설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 세법 및 세무관행은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A. 프랑스에서의 과세

청약시점에는 프랑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국내법에 따르면, 프랑스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12.8%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 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75%의 원천징수세율이<sup>1</sup>적용됩니다).

투자에 따라 실현되는 어떠한 소득도 프랑스에서 과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B. 한국에서의 과세

### ■ 청약 시점

청약시 할인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할인금액은 주식 취득 시의 시장가격에서 청약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시점은 해당 직원이 청약가격을 납입하는 시점입니다. 청약가격은 총액으로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24개월에 걸친 급여공제는 고용주가 제공한 대여금의 상환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적용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하여 6.6% ~ 49.5%<sup>2</sup>입니다.

할인금액은 아케마가 부담하고 귀하의 고용주에게 청구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의 고용주가 세액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매월 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케마가 부담하고 국내 고용주에게 청구되지 않는 근로소득은 다음 해의 국민연금보험료 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증가시키지만 실무상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배당금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총액이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배당소득은 6.6%~49.5%의 통상적인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해당 직원은 배당금에 대하여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배당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의 세액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반영됩니다. 배당소득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배당금, 이자 및 임차료 등을 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한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대상입니다. 직원의 세무서 신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공유되어야 하며 배당금, 이자 및 임차료를 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다음 연도 국민건강보험 기준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프랑스 세금에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한선은 지급 대상 한국 소득세를 총 (국제) 과세소득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함). 최대 허용 공제액을 초과하는 외국 세액은 10년 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

### ■ 인출제한기간의 만료 및 /또는 주식의 처분

주식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취득시의 시장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의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약 €1,690)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인출제한기간 만료시 자동적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up>1</sup>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 리스트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골라, 바하마,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세이셸, 바누아투.

<sup>2</sup>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따른 세율은 6.6~49.5%.

## 기타사항

### ■ 배당금의 수취, 청약, 주식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신고의무

주식취득자금의 송금시 필요한 외국환관리 목적상의 신고/확인 절차 및 위에서 설명한

세무신고를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외국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해외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의 월 잔고가 당해 연도의 각 월말에 5억원(약 €337,975) 또는 동액 상당의 외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6월 내에 해당 계좌를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고 요건에 따라, 주식이 최초 부여되는 때와 달리, 한국 고용주는 개인소득세 목적으로(예: 행사 시(스톡옵션), 귀속 시(무상주식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 또는 매입/교부 시(종업원주식매수제도(ESPP)) 주식보상이 과세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적절한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고용주의 할인 금액 및/또는 대응 출자 비용 부담 여부를 불문하고 2024년 이전에 부여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행사, 귀속 또는 매입/교부되는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직원의 주식 보상에 대한 과세 시기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급여공제를 통하여 상환되는 고용주 제공 대출금 관련 세무사항

24개월 분할 급여공제를 통하여 청약가격을 납입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청약금액에 해당하는 무이자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급여공제에 따라 감소하는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연4.6%의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이자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가산될 것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6.6%~49.5%<sup>3</sup>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정이자 금액은 국내 고용주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시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에 인정이자금액을 가산).

이러한 금액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3.545% 부담,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국민연금 (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4.5% 부담), 고용보험 (직원이 0.90%, 고용주가 1.15%~1.75%<sup>4</sup> 부담), 산재보험 (고용주만 0.56%~18.56% 부담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고용주 부담분 0.06%, 고용주만 0.006%부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부담분).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고용주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합니다.

## 무상주식

### ■ 무상주식 취득권 부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

무상주식 취득권 부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는 없습니다.

### ■ 무상주식을 교부 받을 권리의 권리확정일로부터 주식 교부일까지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

권리확정이 주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경우, 확정 시점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확정된 주식이 교부 이전에 박탈될 수 있는 경우, 교부 시점까지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주식 교부일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

확정 시점에 과세가 되지 않은 경우, 교부 시점의 무상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주민세 포함)의 경우 6.6%부터 49.5%<sup>5</sup> 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부담을 하는 무상주식에 관하여, 해당 무상주식에 적용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무상주식 교부에 따른 비용을 아케마에 상환을 통해 귀하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무상주식의 교부시점의 시장가격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경우, 아케마에 상환을 통해 귀하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은 다음 해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료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 주식 매도일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또는 사회보험료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그에 대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의 책임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주식 귀속일/교부일의 시장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세율은 20%이며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up>3</sup>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따른 세율은 6.6~49.5%.

<sup>4</sup>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0.9%, 고용주가 1.15%~1.75% 부담할 것입니다.

<sup>5</sup>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따른 세율은 6.6~49.5%.